

#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수전문직2급 / hoonchung@kipf.re.kr

- 01** 들어가는 글
- 02** 조사 및 분석결과
-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2022.12.30.

No.138



요약

- 배당소득은 (국외배당의 경우에는 원천지) 관할국에서 既과세된 소득의 분배로 통상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의 적용에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필요함
  - 과세면제와 세액공제는 근본적으로 과세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임
  - 우리나라 이중과세 조정은 국외배당에 대해서는 통상적 세액공제, 국내배당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과세면제 (익금불산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과세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나,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국외배당에 과세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배당도 국외배당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OECD 대부분의 회원국(28개국)이 국외배당에 과세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대다수(17개국)가 국내배당도 국외배당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국외배당의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의 전환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국외배당 유입의 증가, 세수 감소, 국외투자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나, 실제 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주장이 있음
- 국외배당의 과세면제 적용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배당의 이중과세 조정도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국외배당의 과세면제 적용 시 비용 절감 수준, 현행 제도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함
  - 국외배당의 과세면제와 더불어 국내배당의 제도 설계도 국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2022. 6. 22.(수))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01 들어가는 글

- 배당소득은 (국외배당의 경우에는 원천지) 관할국에서 既과세된 소득의 분배로 통상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의 적용에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필요함
  - 이중과세 방지 장치는 과세면제(exemption)와 세액공제(credit)로 구분됨
    -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은 후자(법법 §94), 내국법인 간 국내원천소득은 전자(법법 §18조의2 및 3)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국외배당의 경우 과세면제가 적용되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여기에서 다루는 범위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국내·외 '배당소득'으로 범위를 한정함<sup>1)</sup>

1)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자회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의 (국외원천소득인) 배당은 국외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국내배당으로 지칭함.

- 특히 국외배당에서 과세면제와 세액공제의 사회경제적 효익·비용과 이외의 고려사항을 다루며, 내국법인

간 배당은 현행 체계 내 복잡성과 이중과세 방지 수준에서 검토함

## 02 조사 및 분석결과

### 1.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의 제도

- 과세면제와 세액공제는 근본적으로 과세면제는 소득(income)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세액(tax)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임(OECD MC, 2017)
  - 과세면제는 배당수취금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비과세하더라도 누진세 체계 적용 여부에 따라 완전 과세면제(full exemption)와 누진 과세면제(exemption with progression)로 구분됨
  - 세액공제는 배당소득은 과세하되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완전 세액공제(full credit)와 통상적 세액공제(ordinary credit)로 구분됨
  - 우리나라 이중과세 조정은 국외배당에 대해서는 통상적 세액공제, 국내배당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과세면제(익금불산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 주요국의 제도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대다수의 국가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국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수의 경우 소유·기간 요건과 더불어 저율과세된 소득의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배제 요건을 두고 있음
    - 소유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은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PSD)의 10% 및 2년 한도로, 10% 및 1~2년이 가장 빈번하나 요건을 두지 않는 회원국도 다수 존재함
    - Negative 방식으로 CFC와 연계하는 등의 세율을 기준으로 저세율 관할국을 정의하거나 블랙리스트(또는 EU의 경우 비협력관할국)를 두어 과세면제를 배제하거나, Positive 방식으로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함
  - 면제 비율은 대부분 100%이나 관련 비용공제를 고려한 95%도 일부 존재함
- 다수의 경우 국내와 국외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동일(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음

표 1 우리나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체계

구분	과세면제		세액공제	
	완전 과세면제	누진 과세면제	완전 세액공제	통상적 세액공제
국외배당				√
국내배당	√ <sup>1)</sup>			

주: 1)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 비율의 과세면제(익금불산입).  
 자료: 저자 작성(공청회 발표자료)

표 2 주요국의 국외배당 이중과세 조정방법

이중과세 조정방법	국가 수	관할국
과세면제	28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세액공제	5개국	칠레, 콜롬비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완전한) 속지주의	1개국	코스타리카
제한적·혼합 적용 <sup>1)</sup>	3개국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주: 1) EU 또는 EEA에 한하여 과세면제를 적용하고, 이외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관할국.  
 자료: 저자 작성(공청회 발표자료)

표 3 주요국의 국내배당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국외배당과의 비교

국외배당 이중과세 조정방법	국가 수	국외배당 대비 국내배당 요건과 이중과세 조정 수준			
		동일 <sup>1)</sup>	다름 <sup>2)</sup>	강화 <sup>3)</sup>	완화 <sup>4)</sup>
과세면제	28개국	17	2	5 (미국, 일본 등)	4
세액공제	5개국	1	(대한민국)		4
(완전한) 속지주의	1개국	1			
제한적·혼합 적용	3개국	3			

주: 1) 동일: 국외와 국내의 고유한 계 등을 제외한 다른 사항(면제비율, 소유비율, 보유기간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2) 다름: 제도(과세면제, 세액공제) 자체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3) 강화: 국외와 국내의 고유한 계 등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보다 강화해서 운영하는 경우(국외배당의 지분비율 요건 미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완화라고 볼 수 있지만, 과세면제 비율 및 국내배당의 원천징수 부과 여부를 기본으로 전반적인 영향을 주관적으로 고려함).  
 4) 완화: 국외와 국내의 고유한 계 등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보다 완화해서 운영하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공청회 발표자료)

- 국내와 국외의 고유한 차이(조약 등) 이외에 과세면제 비율이나 요건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외와 국내(내국법인 간) 배당소득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

- 성이 있음
  - 세액공제제도에서는 저세율 관할국으로부터의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 관할국의 법인세율까지 과세될 수 있지만, 과세면제에서는 국외배당소득은 원천지국 법인세율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국외 유보금의 유입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국외투자 유인으로 인한 결과로 유보금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지표(잉여금 등)가 존재하지 않으나, 전반적인 조사에서 확인된 자본 규모나 배당 등의 추세나 규모(한국수출입은행, 2014~2019)를 단순히 보면 과세면제의 효과(영향)가 있을 수도 있음

### 3. 경제적 영향

-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의 전환은 직관적으로 보면 조세부담 경감으로 국외배당 유입의 증가 및 세수 감소 효과와 더불어 국외투자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 과세면제는 세액공제에서 운영되는 공제한도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국외배당 유입의 증가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율보다 낮은 국외 관할국의 투자가 증대될 가능

-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는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표 4 국외배당 과세면제로의 영향 및 선행연구

국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연구	불확실 또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 연구
대한민국	우리나라 송금세 부담률은 법인세율 차이로 9% 내외로 나타남(김준현, 2018)	국외배당은 거주지국의 적용보다는 환율의 영향이 더 유의미함(김정훈·김우철, 2020) 2018년 기준 과세면제로 전환 시 약 4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함(김정훈·김우철, 2020)
미국	미국 TCJA 이후 유의미한 국내 송금이 이루어짐(York, 2018) 2018년에는 2017년 역외 현금보유액의 78%에 달하는 약 7천억달러의 송금이 이루어짐(Smolynsky et al., 2019)	기업들이 과세면제로 인한 송금세 혜택을 예상하여 초과 국외 현금잔고가 존재하였으며, 이후 국외로의 소득이전과 영구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이 증가함(Simone et al., 2018)
일본	2011~2014년 사이 배당 성향이 10p% 이상 상회한 65.6%로 증가하였으며, 단기적(2009~2010)으로는 80%대에 이름(諸富 徹, 2016) 내부 유보잔액이 클수록 원천지 관할국의 원천징수세율의 영향을 받음(長谷川 誠·清田 耕造, 2015) 법인세율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자회사 유보이익이 높을수록 원천징수세율의 민감도가 더 높음(Hasegawa and Kiyota, 2017)	법인세율이 낮으면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국내 송금액을 증가시키지 못함(Bachmann and Baumann, 2016)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 사용료를 배당으로 전환함(Hasegawa and Kakabayashi, 2021)
영국	단기적으로 국외배당 송금액이 제도적 영향 이외에도 경제적(평균적)으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음(Egger et al., 2015)	배당 과세면제로 국내 투자나 생산성이 영향받았는지는 불명확함(Egger et al., 2015) 고세율국으로부터의 이전이나 내국투자의 왜곡으로 인한 것이 아닌, 순수 저세율국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Liu, 2020)
독일	-	조세조약 미체결 관할국 및 활동 조항이 존재하는 조약 체결국의 배당을 포함하는 과세면제 전면 도입은 해당 국가들의 수동적 자산 투자를 증가시킴(Ruf and Weichenrieder, 2012)

자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국외배당의 과세면제 적용 시 비용 절감 수준, 현행 제도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조세행정과 납세협력 비용이 경감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요건(소유지분, 보유기간, 자회사 활동, 저세율 관할국 등)과 적용방법(누진면제 적용 여부, 면제비율

- 등)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
- 과세면제 요건 미충족 시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함
  - 주요국의 사례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운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과세면제와 이전가격, 혼성불일치, CFC, GloBE 최저한세와의 상호관계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현행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세액공제로 규정되어 있어, 내국세법상 과세면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명문상 상충 또는 (가능성은 낮지만) 중복 공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 국외배당의 과세면제와 더불어 국내배당의 제도 설

### 계도 재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현행 우리나라와 같이 국외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국내배당은 과세면제제도로 운영하는 OECD 회원국은 확인되지 않음
- 우리나라와 같이 내국법인 간 배당에 지분율 등에 따라 과세면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2개국으로 확인되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회사(지주회사 여부)와 자회사(상장 여부)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 적용은 없음

## 참고문헌

- 김정훈·김우철,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편』, 재정정책연구원, 2020. 5.
- 김준현, 「해외자회사의 소득 지급에 대한 조세 부담 추정」, 『세무학 연구』, 35(4), 2018, pp. 9~39.
- 諸富 徹, 「法人税改革の日米比較~国境を超える法人所得にいかにかに課税するか~」, 第1回東京都税制調査会, 平成28年度.
- 長谷川 誠·清田 耕造, 『国外所得免除方式の導入が海外現地法人の配当送金に与えた影響: 2009-2011年の政策効果の分析』,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5-J-008, 2015. 3.
- Carmen Bachmann and Martin Baumann, “The repatriation incentive of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system,” *APPLIED ECONOMICS*, 48(29), 2016, pp. 2736~2755.
- Erica York, *Evaluating the Changed Incentives for Repatriating Foreign Earnings*, Tax Foundation, 2018.
- Li Liu, “Where Does Multinational Investment Go with Territorial Taxation?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2(1), 2020, pp. 325~358.
- Lisa De Simone·Joseph D. Piotroski and Rimmy E. Tomy, “Repatriation Taxes and Foreign Cash Holdings: The Impact of Anticipated Tax Reform,”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2(8), 2018, pp. 3105~3143.
- Makoto Hasegawa and Kozo Kiyota, “The effect of moving to a territorial tax system on profit repatriation: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53, 2017, pp. 92~110.
- Makoto Hasegawa and Michi Kakebayashi, “The Effect of Foreign Dividend Exemption on Profit Repatriation through Dividends, Royalties, and Interest: Evidence from Japan,” Discussion Paper No. E-20-004, 2021. 9.
- Martin Ruf and Alfons J. Weichenrieder, “The taxation of passive foreign investment: lessons from German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 Revue canadienne d’Economie*, 45(4), 2012, pp. 1504~1528.
- Michael Smolyansky, Gustavo Suarez and Alexandra Tabova, “U.S. Corporations’ Repatriation of Offshore Profits: Evidence from 2018,” FEDS Notes, 2019, <https://www.federalreserve.gov>

gov/econres/notes/feds-notes/us-corporations-repatriation-of-offshore-profits-20190806.html, 검색일자: 2022. 6. 14.

-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7, 21 NOVEMBER, 2017.
- Peter Egger, Valeria Merlo, Martin Ruf and Georg Wamser, “Consequences Of The New Uk Tax Exemption System: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The Economic Journal*, 125, 2015, pp. 1764-1789.

〈웹 사이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경영통계, <https://www.koreaexim.go.kr/index>, 검색일자: 2022. 6. 14.
- Bloomberg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page/page\\_international](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page/page_international), 검색일자: 2022. 6. 14.
- CEPR, “Tax reform and corporate behaviour: Evidence from the UK”, <https://cepr.org/voxeu/columns/tax-reform-and-corporate-behaviour-evidence-uk>, 검색일자: 2022. 6. 14.
- IBFD, <https://www.ibfd.org>, 검색일자: 2022. 6. 14.
- Tax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 검색일자: 2022. 6. 14.

토론요약 |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공청회 전문가 토론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로 해외 유보금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투자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주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상국가, 자회사 지분율, 면제비율 등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함
    - 제도 운영에 따라서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현행 조세조약과 충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외국의 조세조약 체결례와 같이 면제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조약 재·개정 시 이중과세방지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세 필라2와의 관계에서는 OECD의 GloBe(글로벌최저한세) 소득 조정에 따라 국외 원천배당소득면제 제도에 따른 배당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필라2와 충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면제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의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에 대한 처리방법 경과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안중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보적인 입장임
  - 국내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 납부세액이 최저한세를 통해 제한되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국외 원천소득을 국외에 두려는 인센티브와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시킬 수 있음
  - 2023년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외 배당 과세제도 또는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면제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제도가 이론적으로 ‘자본수입중립성’을 가져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자본수입중립성은 국내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 투자자금 원천의 국내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상대국에서는 투자자에 대해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를 적용할 때 달성되는데, 이 경우 국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됨
- 선진국들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서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로 전환한 이유는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였기 때문임
  - 즉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고민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함
  - 제도 설계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임
- 국회에서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의 대폭 완화가 필요함

**이동건**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 도입으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세액공제제도에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고세율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 중 국내 법인세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저세율 국가에서 자국 법인세율보다 낮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상호교차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이것을 막기 위해 일괄 한도를 폐지하고 국별 한도방식만 도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여러 규제가 겹쳐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
    - 국별 한도방식의 경우 고세율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일부 공제되지 않고, 저세율 국가의 경우 남은 한도가 이월되지 않음
- **현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 한도 방식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국내 손금산입 비용 중 국외 원천소득과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배부하는 것도 기업에는 부담이 됨**
  - 과세면제가 시행된다면 국내와 해외 이익을 구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세액공제제도는 지역별로 이익을 다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음
  - 현재 다국적기업들은 지배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물론 과세 당국에도 부담을 줌
    - 그러므로 국외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가 도입된다면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국외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해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세면제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제도 전환은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과 함께 조세 경쟁력 강화에도 공헌할 수 있음
  - 해외에 유보된 자회사들의 이익이 상당하고 환율이 높은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과세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반면 제도가 도입될 시 야기될 문제에 대해 미리 대응해야 함**
  -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 이전의 유인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과세면제제도와 CFC 제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CFC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함
  -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의 경우 광범위한 분기과세와 함께 부정확한 gross-up 비율 및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적용으로 인해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편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함

## 여론조사 I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관한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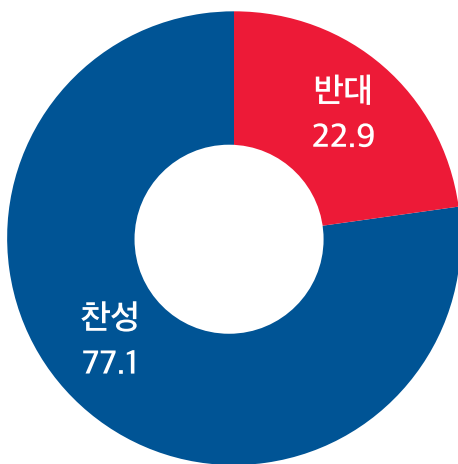
※ 2022년 7월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배당금 익금불산입 내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제도 등을 개정함. 이에 「조세재정브리프」 제132호에서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함

<p>조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및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li> <li>*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무·회계담당자</li> </ul> </li> </ul>
<p>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리스트에 작성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로 조사 URL 발송 후 웹 조사(CAWI) 및 모바일 조사(CAMI) 병행</li> </ul> </li> <li>•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서 제공한 업체 대표 번호를 통해 재무·회계담당자와 사전접촉 시도</li> <li>* 재무·회계담당자가 전달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로 조사 URL 발송 후 웹 조사(CAWI) 및 모바일 조사(CAMI) 병행</li> </ul> </li> </ul> <p>※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 CAMI(Computer Aided Mobile Interview)</p>
<p>조사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0명(전문가 70명, 기업체 100명)</li> </ul>
<p>조사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2022년 9월 15일 ~ 9월 24일</li> <li>• 기업체: 2022년 9월 15일 ~ 9월 26일</li> </ul>
<p>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리서치</li> </ul>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일반·지주회사 여부와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체(74.0%) 대비 전문가(81.4%) 집단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기업체 규모별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약 80% 이상이 찬성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59.5%가 찬성함

Q. 최근 정부는 아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일반·지주회사 여부와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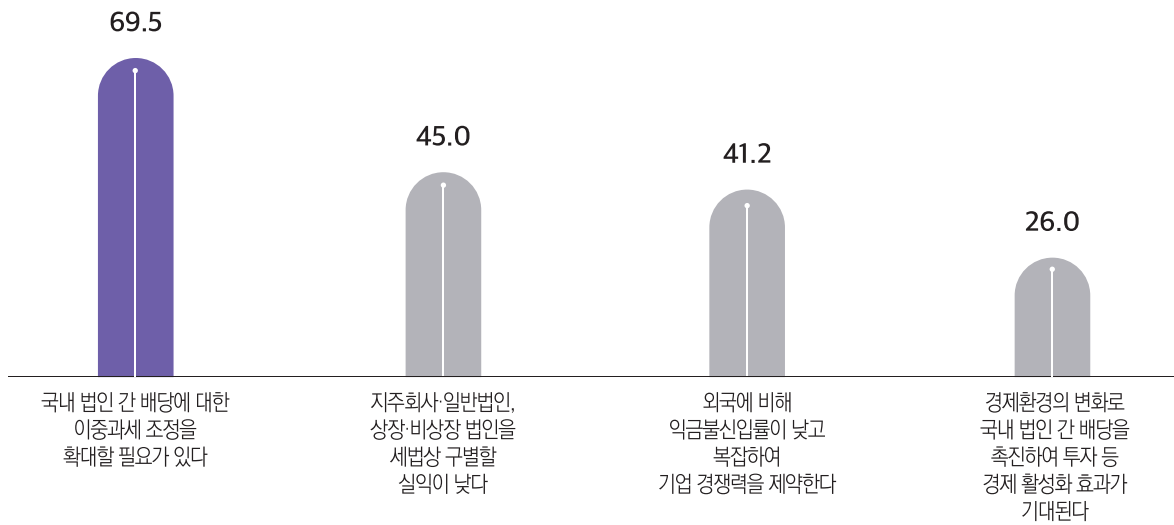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170)	77.1	22.9
구분	전문가	(70)	81.4	18.6
	기업체	(100)	74.0	26.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37)	59.5	40.5
	중견기업	(39)	79.5	20.5
	대기업	(24)	87.5	12.5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 ‘국내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내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업체(62.2%) 대비 전문가(78.9%)에서 높음

Q. 최근 정부는 아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일반·지주회사 여부와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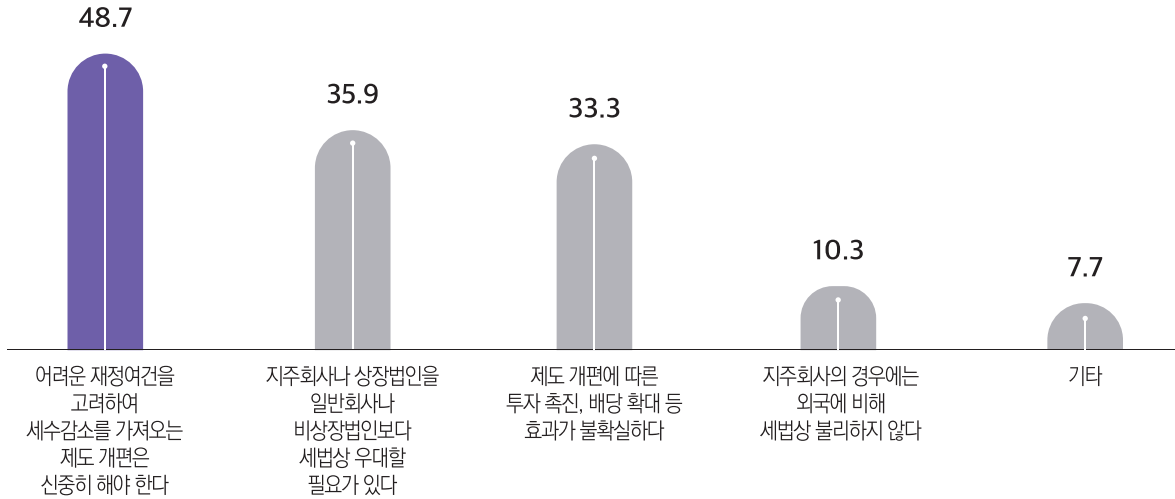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국내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일반법인, 상장·비상장 법인을 세법상 구별할 실익이 낮다	외국에 비해 익금불산입률이 낮고 복잡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	경제환경의 변화로 국내 법인 간 배당을 촉진하여 투자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131)	69.5	45.0	41.2	26.0
구분	전문가	78.9	52.6	50.9	24.6
	기업체	62.2	39.2	33.8	27.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59.1	40.9	18.2	31.8
	중견기업	61.3	48.4	41.9	29.0
	대기업	66.7	23.8	38.1	19.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은 신중히 해야 한다’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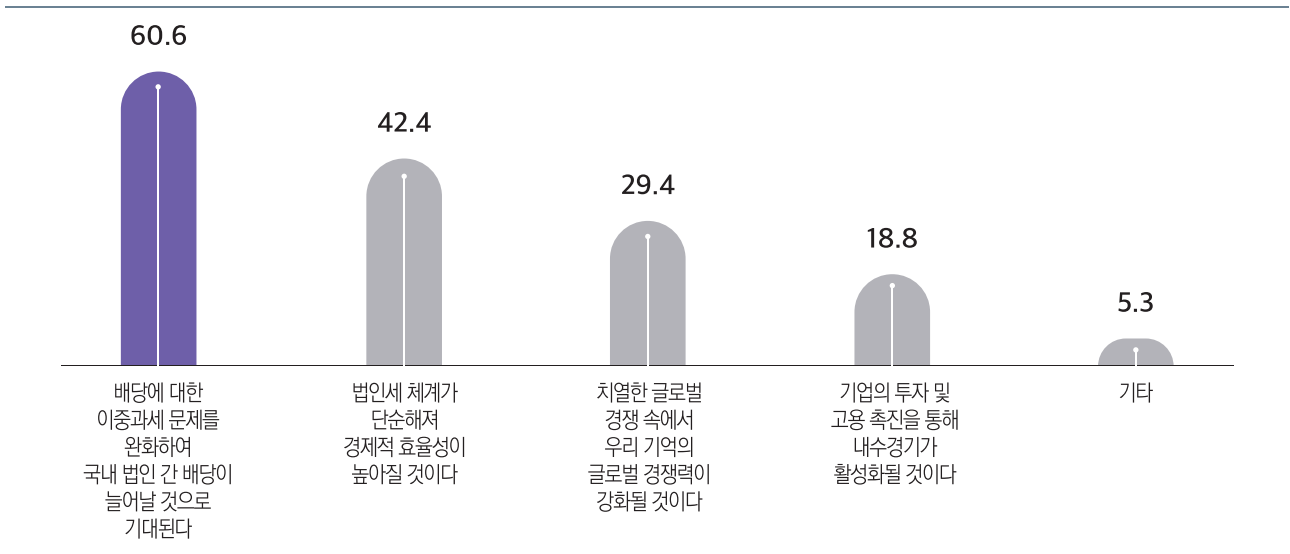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은 신중히 해야 한다	지주회사나 상장법인을 일반회사나 비상장법인보다 세법상 우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투자 촉진, 배당 확대 등 효과가 불확실하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 세법상 불리하지 않다	기타	
전체	(39)	48.7	35.9	33.3	10.3	7.7	
구분	전문가	(13)	46.2	53.8	53.8	0.0	15.4
	기업체	(26)	50.0	26.9	23.1	15.4	3.8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15)	60.0	33.3	26.7	6.7	0.0
	중견기업	(8)	25.0	12.5	25.0	37.5	12.5
	대기업	(3)	66.7	33.3	0.0	0.0	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 시, 기대되는 효과

-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조정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여 국내 법인 간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여 국내 법인 간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업체 (57.0%) 대비 전문가(65.7%)에서 높으며, 기업체 규모별로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응답 비율이 높음

Q.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조정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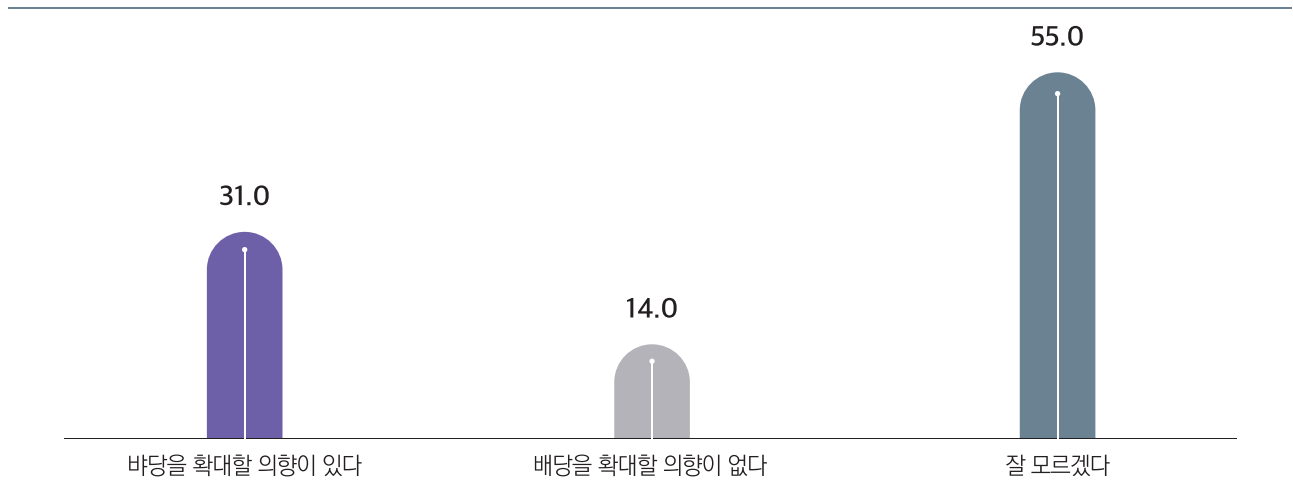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여 국내 법인 간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체계가 단순해져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을 통해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기타
전체	(170)	60.6	42.4	29.4	18.8	5.3
구분	전문가	65.7	47.1	37.1	15.7	8.6
	기업체	57.0	39.0	24.0	21.0	3.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48.6	24.3	27.0	21.6	5.4
	중견기업	61.5	53.8	23.1	23.1	2.6
	대기업	62.5	37.5	20.8	16.7	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 시, 배당 확대 의향

-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조정된다면, 전체 응답자의 31.0%가 국내 자회사의 유보된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5.0%로 대부분 배당 확대 의향이 불확실한 상황임
  - 국내자회사의 유보된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확대할 의향은 기업체 규모별로 30%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Q.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조정된다면, 국내 자회사의 유보된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Base: 기업체, 사례 수: 1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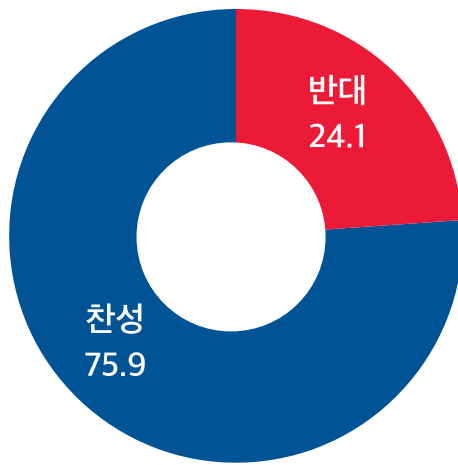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배당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	배당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	31.0	14.0	55.0	
구분	전문가	(0)	-	-	
	기업체	(100)	31.0	14.0	55.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37)	27.0	16.2	56.8
	중견기업	(39)	33.3	15.4	51.3
	대기업	(24)	33.3	8.3	58.3

●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자회사가 송금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방식으로 변경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찬성 비율은 전문가와 기업체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업체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0% 이상이 찬성한 반면, 중소기업은 67.6%가 찬성함

Q. 최근 정부는 해외 자회사가 송금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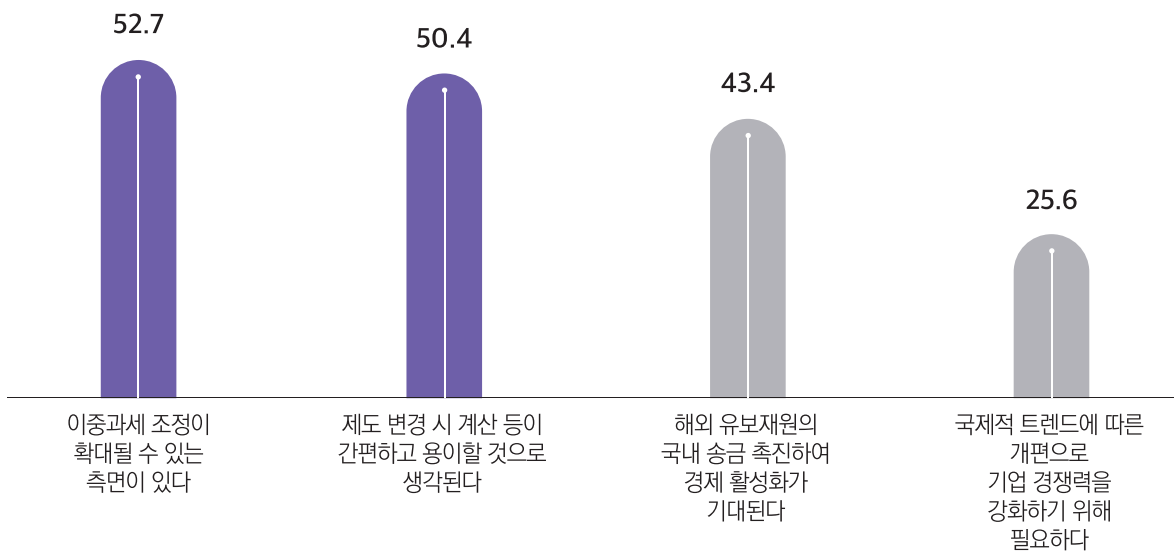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170)	75.9	24.1
구분	전문가	(70)	72.9	27.1
	기업체	(100)	78.0	22.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37)	67.6	32.4
	중견기업	(39)	82.1	17.9
	대기업	(24)	87.5	12.5

●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

-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52.7%)’와 ‘제도 변경 시 계산 등이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50.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는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60.8%)’, 기업체는 ‘제도 변경 시 계산 등이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51.3%)’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이 외에 전문가는 ‘국제적 트렌드에 따른 개편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43.1%)’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업체 대비 높음

Q.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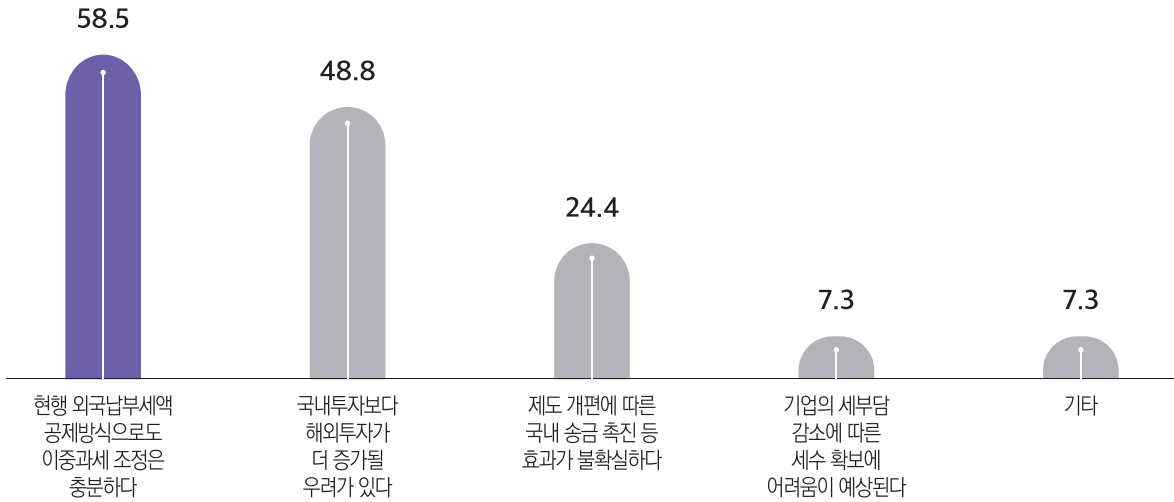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제도 변경 시 계산 등이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유보재원의 국내 송금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제적 트렌드에 따른 개편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체	(129)	52.7	50.4	43.4	25.6
구분	전문가	60.8	49.0	51.0	43.1
	기업체	47.4	51.3	38.5	14.1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44.0	56.0	40.0	16.0
	중견기업	50.0	50.0	40.6	15.6
	대기업	47.6	47.6	33.3	9.5

●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으로도 이중과세 조정은 충분하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다(48.8%)'가 높게 나타남
  -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도 이중과세 조정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업체(45.5%) 대비 전문가(73.7%)에서 높음

Q.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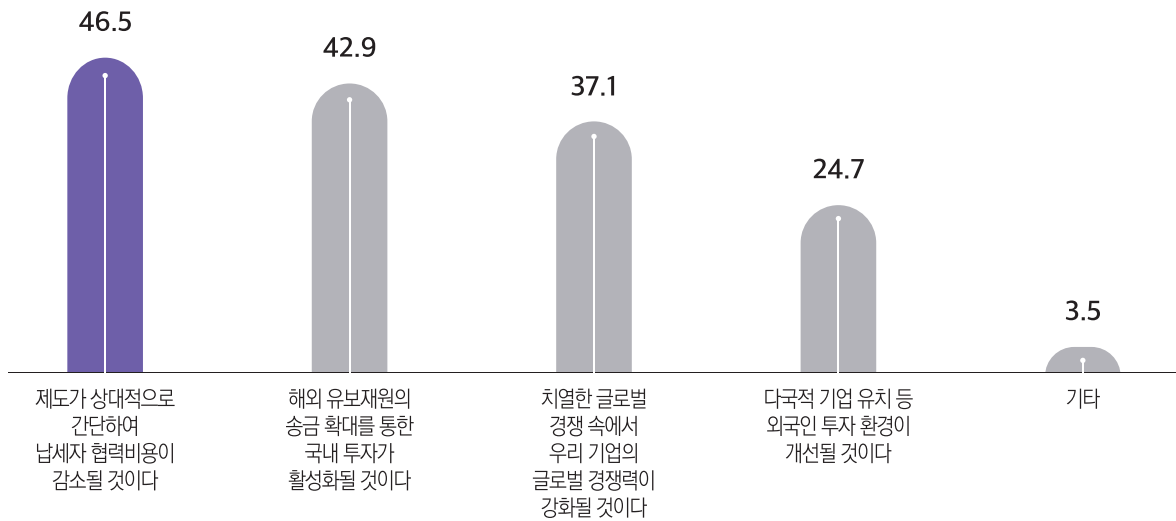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으로도 이중과세 조정은 충분하다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국내 송금 촉진 등 효과가 불확실하다	기업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타
전체	(41)	58.5	48.8	24.4	7.3	7.3
구분	전문가	(19) 73.7	57.9	26.3	5.3	5.3
	기업체	(22) 45.5	40.9	22.7	9.1	9.1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12) 33.3	66.7	25.0	16.7	8.3
	중견기업	(7) 71.4	14.3	14.3	0.0	0.0
	대기업	(3) 33.3	0.0	33.3	0.0	33.3

●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 시, 기대되는 효과

-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로 '제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납세자 협력비용이 감소될 것이다'가 46.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해외 유보재원의 송금 확대를 통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42.9%)'가 높게 나타남
  - '제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납세자 협력비용이 감소될 것이다'는 전문가(50.0%)와 기업체 규모별로 중견기업(53.8%)에서 응답 비율이 높음

Q.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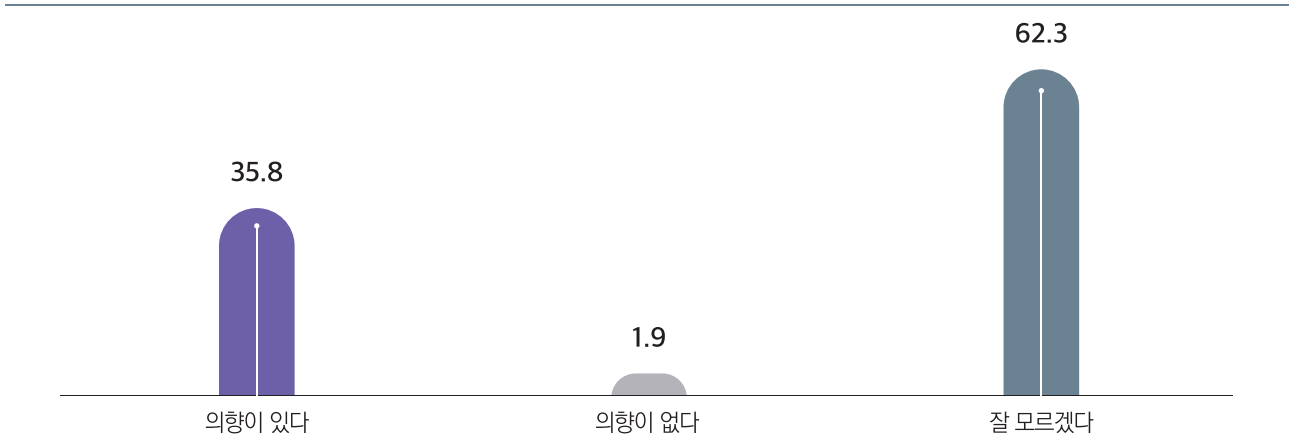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제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납세자 협력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해외 유보재원의 송금 확대를 통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기타
전체	(170)	46.5	42.9	37.1	24.7	3.5
구분	전문가	(70) 50.0	45.7	44.3	25.7	7.1
	기업체	(100) 44.0	41.0	32.0	24.0	1.0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37) 37.8	37.8	37.8	37.8	2.7
	중견기업	(39) 53.8	43.6	25.6	20.5	0.0
	대기업	(24) 37.5	41.7	33.3	8.3	0.0

## 조세재정 Brief

### 이중과세 조정방식 개정 시,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국내 송금 의향

-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된다면,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 중 35.8%가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2.3%로 대부분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국내 송금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임
  - 대기업(27.3%) 대비 중견기업(40.7%)에서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국내 송금 의향이 높음

Q.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된다면,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53)	35.8	1.9	62.3	
구분	전문가	(0)	-	-	
	기업체	(53)	35.8	1.9	62.3
기업체 규모	중소기업	(4)	50.0	0.0	50.0
	중견기업	(27)	40.7	0.0	59.3
	대기업	(22)	27.3	4.5	68.2